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60

발의연월일: 2020. 7. 6.

발 의 자:김민기ㆍ이원욱ㆍ강선우

정춘숙・허 영・송기헌

안민석·조승래·김주영

이재정 의원(총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보니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, 이후 시설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, 농업생산기반 시설이나 용수가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(안 제23조제2항 및 제5항). 법률 제 호
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사용범위, 그 밖에"를 "사용범위,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, 그 밖에"로 한다.

이 경우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	제23조(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
허가) ① (생 략)	허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	2
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	
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	
서 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<u>이 경우 미리</u>
	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
	<u>다.</u>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·기간	5
및 범위, 사용료 징수 범위와	
징수된 사용료의 <u>사용 범위, 그</u>	사용 범위, <u>관</u>
<u>밖에</u>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	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, 그
으로 정한다.	밖에